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957
----------	------

제안연월일 : 2024년 6월 17일
제안자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1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0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상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의 제·개정에 따른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와 더불어,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년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여 책임있는 청년 참여와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도모함
- 청년자율예산 운영상의 회계원칙과 예산편성 절차 등을 확립하기 위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로 '정책결정과정'을 추가 규정하여 실질적인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함 (안 제1조)
- 나. 청년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청년의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년의 책무'를 신설함 (안 제4조의2 신설)
- 다.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에 대하여 다른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함 (안 제5조 신설)
- 라. '예산·회계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마.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2항)
- 바. 다양한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위원 및 위원장의 연임기준을 마련함 (안 제10조제4항 및 안 제11조제3항)
- 사. 시장예산편성권, 의회 예산안 심의권 등 회계원칙 확립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총회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12조)
- 아. 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동운영위원장의 협의를 통한 공동의견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3조제2항)
- 자. 조례상 용어를 정비함 (안 제14조)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과 「청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청년의 책무) ①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은 시정참여를 통하여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기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시정참여를 위하여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은 상호 존중하며, 안전한 활동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에 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중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년자율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해 규정된 법령과 회계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한 노력
 2.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및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
 3.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0조(중전의 제9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청년참여기구는 성별이 다른 2명의 위원장(이하 “공동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공동운영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를 “총회”로, “정한다”를 “정하며,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된 예산편성안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의는”을 “총회는”으로, “온라인 정책패널과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을 “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① 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회의”를 “총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동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정넷은”을 “청년참여기구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참여기구 위원 및 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통산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u>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과 「청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u>을----- ----- ----- ----- ----- ----- ----- ----- ----- -----</p> <p><u>제4조의2(청년의 책무) ①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은 시정참여를 통하여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기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u></p> <p><u>②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시정참여를 위하여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은 상호 존중하며, 안전한 활동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에 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u></p>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생략)

<신 설>

제6조 (생략)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생략)

<신 설>

② ~ ⑤ (생략)

제8조 (생략)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청년자율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해 규정된 법령과 회계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8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한 노력
2.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및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
3.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 ① (생략)

②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청년참여기구의 위원 위촉은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청년참여기구는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성별 동수의 2인 공동운영위원장을 둔다.

<신설>

제10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제>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청년참여기구는 성별이 다른 2명의 위원장(이하 “공동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공동운영위원장은 민주적 절

제12조(총회) ① 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하며 그 명칭은 서울 청년시민회의(이하 “회의”로 한다)로 한다.

② 회의는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④ 회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온라인 정책패널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정책패널과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생략)

⑥ 회의에서 의결한 청년자율예산편성안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차를 통해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총회) ① 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총회-----

정하며,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된 예산편성안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는 -----

----- 그 -----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13조(운영위원회) ① -----

는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2. (생략)
- 3. 회의의 개최에 따른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생략)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정넷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 1. 2. (현행과 같음)
- 3. 총회-----

- 4.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동운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년참여기구는 -----

-----.

- 1. ~ 3. (현행과 같음)